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86

발의연월일: 2020. 9. 28.

발 의 자:정춘숙·남인순·김영진

김윤덕 · 김정호 · 김상희

윤후덕 • 권칠승 • 강민정

김민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인해 법정비율보다 부족하게 지원해 왔으며, 보험료 예상수입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문제점은 계속 지적 되어 왔음. 또한 부칙상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몰제로 운영되는 한 시법으로 되어 있어 이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고,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규정을 삭제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08조제1항).

법률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를 "전전년도 결산상"으로, "예상 수입액의"를 "수입액의"로, "14에 상당하는"을 "17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에"를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9호의2에"로 한다.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
원) ① 국가는 매년 <u>예산의 범</u>	원) ① <u>전전년도</u>
<u>위에서 해당 연도</u> 보험료 <u>예상</u>	<u>결산상수입액의</u>
<u>수입액의</u> 100분의 <u>14에 상당하</u>	<u>17에 해당하는</u>
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	
원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공단은 <u>제2항에</u> 따라 지원	④「국민건강증진법」
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	제25조제1항제9호의2에
에 사용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108조는 2022	<u><삭 제></u>
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	
<u>다.</u>	